

2015.10.16.(금) ~
10.22.(목) / 6일간

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	4
2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	4
3.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5
4.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	5
5.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6
6.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8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	원안가결
○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	답변청취
○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수정가결
○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- 발의일자 : 2014. 10. 16.
- 발 의 자 : 김옥, 김희식 의원
- 제안이유
 -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.
- 주요내용
 - 출석요구일시 : 2014. 10. 21.(09:00) ~ 2015. 10. 21.(24:00)
 - 출 석 범 위 : 군수 및 『장성군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
 - 출 석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- 법적근거
 -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
 - 장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 -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5. 10. 16.)

2. 군정에 관한 질문·답변의 건

- 질문일시 : 제2차 본회의 / 2015. 10. 21.(1일간)

- 질문의원 : 5명 의원

- 김옥 · 김행훈 · 임동섭 · 김희식 · 고재진 의원

- 군정질문 및 답변

- ※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⇒ 회의록 검색 ⇒ “**군정질문**” 참고

3.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6.

- 제 출 자 : 김희식, 고재진 의원

-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연서로 전라남도
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“주민감사청구 제도”를
활성화 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- 감사청구 가능 주민수 하향 : 200명 이상 ⇒ 100명이상

-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3차 본회의 / 2015. 10. 22.)

4.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6.

- 제 출 자 : 고재진, 김희식 의원

- 제안이유

- 범죄피해 시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▪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
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
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함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
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법적근거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3차 본회의 / 2015. 10. 22.)

5.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8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우리군 문화·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정의 규정(안 제2조)

- 장성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군의 역사·문화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,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“문화관광해설사”라 하고, 장성군수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, 평가 후 위촉한 사람을 “문화관광해설가”라 함.

○ 선발 및 위촉(안 제4조, 제5조)

- 군에 거주하는 자로, 소정의 교육과정과 필기,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, 위촉하고 신분증 교부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6조)

- 군수는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
-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실시

○ 문화관광해설사의 등의 책무(안 제7조)

- 군수의 요청에 따라 역사·문화·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

○ 예산지원 및 절차(안 제8조, 제9조)

-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,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,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,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 지원
- 활동일지와 청구서를 군의 배치내역과 대조 확인 후 매월 집행

○ 해설배치 제외 등(안 제10조)

-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해설사는 60일미만, 해설가는 30일 미만일 경우
-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,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되거나,

품위손상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

-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

▪ 법적근거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4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

▪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3차 본회의 / 2015. 10. 22.)

○ 수정안 : 별첨 1

6.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10. 8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·시행
(2015.7.21.)에 따른 상위 법령내용을 반영코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장성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·운영(안 제4조 및 제4조의2)

- 심의회 구성 : 7명 ~ 15명 이하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(안 제12조)

- (기존) : 예산 의결 전 관리계획 의결

- (변경) :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

○ 행정재산 관리위탁 명칭변경(안 제22조 및 제22조의2)

○ 행정재산 교환차금 납부 조항 신설(안 제22조의3)

○ 대부료 등 분할납부 시 연 3%이자율 명시(안 제35조)

○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신설(안 제40조)

○ 변상금 분할납부 시 연 3%이자율 명시(안 제63조)

-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연 3%이자율 신설(안 제63조의2)
- 법적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3차 본회의 / 2015. 10. 22.)

별첨1

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4조(선발)에 “품위가 단정한”을 추가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선발)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·문화·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할 수 있다.	제4조(선발)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·문화·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<u>갖추고 품위가 단정한</u>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할 수 있다.